

등부 2019년 제2490호

인 증 서



정 관 확 인 서

이 정관은 당법인에 비치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12월 9일

회 사 명 :사단법인 이음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6길 40, 201호

대표이사 :서원주



사단법인 이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음(이하 '본 단체')이라 한다. 영문은 E-um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주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문화의 창조와 실현으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통한 문화사회의 구현에 기여한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는 문화활동과 작품생산, 공연 등을 하며, 예술경영과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전통예술공연
2. 시민들의 문화적·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창작공연
3. 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활동에 관한 예술활동 제공
4. 대내외적 세종특별자치시 선양을 위한 활동
5.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과 조사연구
6.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높일 조사연구와 발굴·재현 사업
7. 문화예술진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8.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간행 및 홍보 사업
9. 공공기관에 정책적 의견 개진 또는 건의,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사업, 학술연구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
11. 문화예술 기획 및 공연에 관련한 콘텐츠 사업
12.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및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본 단체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 단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연구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가입)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단체 내규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

부하고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총회 결의에 참여할 권리와 본 단체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본 단체의 정관과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② 후원회원, 연구회원은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본인의 뜻에 의해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으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 ①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시 이사중에서 공동대표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2. 이사 5인 이상 9인 이내
 3. 감사 1인
-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① 본 단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3개월 이내 보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본 단체 임원은 본 단체 정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1. 본 단체의 설립 발기인
2. 본 단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고 해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

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상임이사는 본 단체의 제반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이사장 유고시 그 권한대행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장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 및 이사회와 총회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회

제17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 본 단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하되, 이사장 궐석시에는 본 단체가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임원이 의장이 된다.

제20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각 회원 당 1인에 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이사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2.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 단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4조(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두며, 정기 이사회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궐석 시에는 본 단체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 의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사의 의결권은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회의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7조(사무국)

① 본 단체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그 산하의 팀장 등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본 단체의 대표와 사무국장, 근로자 대표, 참여희망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단체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경비와 유지 방법)

① 본 단체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이사회비 및 후원금
3. 기관의 보조금과 기금
4. 연구 사업 수입금
5. 지정기부금(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6. 기타 수입금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2조(출자 및 용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 편성) 본 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 본 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7조(법인해산)

- ①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시에는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시행한다.

제2조(시행) 이 정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부 2019년 제2490호

인 증

위 정관확인서에 기재된 촉탁인 사단법인 이음 대표이사 서원주의 대리인 김은영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
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9년 12월 9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 서상철 사무소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44, 710호 (보람동,스마트허브Ⅱ)

공증인

서상철

